

제4차산업경제위원회
2012.12.13(목) 17:00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전문위원 송장섭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11월 7일

3. 제안 이유

- 「동물보호법」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등 법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, 동물의 보호·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가. 등록대상동물의 유실·유기 방지를 위한 등록 의무화(안 제3조)
- 나. 도지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동물 등록 제외지역을 정하여 고시(안 제4조)
- 다.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 제4항)
- 마. 유실·유기동물에 대한 필요조치 규정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 - 동물 포획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- 보호조치시 공고 및 반환·처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바.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
사. 시·군 동물 보호업무 경비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(안 제10조제1항)

아. 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제2항)

자. 동물등록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'은 「동물보호법」 개정
에 따라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등 법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,
동물의 보호·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
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들
이 해당 동물을 시장·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
충북도의 계획은 무엇이고, 시군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, 반
려동물 증가로 유기·유실 동물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
에 대한 충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